

#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

산재근로자 치료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 산재발생사업장 중 총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
- 지원조건 재해일부터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산재요양승인기간 중 30일 이상 고용하고, '산재장해가 남거나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'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
- 지원금액 대체인력 채용 임금의 50% 범위내(월 60만원 이내)
- 지원기간 산재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(최소 1개월 ~ 최대 6개월)

산재장애인을 치료종결 후 계속 고용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 제1급~제12급의 산재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- 지원조건 요양종결일(또는 직업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
- 지원금액 및 기간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12개월 이내 지원

제1급 ~ 제3급	제4급 ~ 제9급	제10급 ~ 제12급
월 60만원(최대 720만원)	월 45만원(최대 540만원)	월 30만원(최대 360만원)

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인을 위한 적응훈련 및 운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 원직장에 복귀한 제1급~제12급의 산재장애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
| 직장적응훈련 외부 훈련기관 또는 자체시설을 활용한 적응훈련  
| 재활운동 외부 스포츠시설 또는 자체시설을 활용한 재활운동(헬스, 수영 등)
- 지원조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종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
- 지원금액 직장적응훈련 월 45만원 이내,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이내
-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지원

| 청구방법 산재장애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(지사)로 청구서류 제출  
| 청구서류 청구서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영수증, 통장사본 등

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가능 정도에 대한 평가를 무료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.

- 지원대상 산재로 직무능력이 저하된 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또는 사업주  
| 작업능력평가 산재근로자의 직무수행가능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, 직무조정 등 안정적인 직장복귀를 위한 참고자료 제공  
|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작업능력평가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중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2~12주간의 1:1 전문 재활프로그램 제공
- 운영병원 근로복지공단 인천·안산·대구·창원·순천·대전병원 재활전문센터

☎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☎ 근로복지공단(www.kcomwel.or.kr) 대표전화(1588-0075) 또는 해당 지역본부(지사) 재활보상부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##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

근로자 30인 미만(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가능)이고,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·지원금액·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[일자리 안정자금\(jobfunds.or.kr\)](http://jobfunds.or.kr)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☎ 근로복지공단 1588-0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